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47
----------	-------

제출년월일 : 2023.11.14.

발 의 자 : 설호영 의원 외 11 명

1. 제안이유

- 인구변동의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안산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및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 인구교육·홍보 및 인구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1
-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 7. 조례안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조례안 예고 : 2023. 11. 8. ~ 2023. 11. 13.

【붙임1】 제정조례안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변동의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안산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5.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인력 구성 등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의 인력 구성·운영 등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 공공 연구소(원)·대학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1명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본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인구감소, 인구구조 불균형 등이 초래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인구의 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안산시 인구정책에 공헌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1)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347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시민참여단 조문을 삭제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주요골자

- 안 제8조 “ 시민참여단” 을 삭제 (안 제8조)
-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을 신설 (안 제10조제3호)
- 안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로 수정 (안 제10조)
-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수정 (안 제9조 ~ 안 제16조)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민참여단의 인력 구성·운영 등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9조 (생 략)</p> <p>제10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2. (생 략)</p> <p><신 설></p> <p>3. ~ 5. (생 략)</p> <p>제11조 ~ 제16조 (생 략)</p>	<p style="color: blue;"><삭 제></p> <p>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p>제9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blue;">3.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10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p>